

사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

1. 심사 경과

- 제 출 : 2007. 11. 27.(사천시장)
- 회 부 : 2007. 11. 27.(총무위원회, 의안번호 제84호)
- 상 정 : 2007. 12. 05.(제119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상정, 의결)

2. 제안설명 요지(회계과장 문필상)

가. 제안이유

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시행령 개정('06. 12. 30) 및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기준 변경('07. 3. 9)에 따른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동 조례의 관련 내용과 체계를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도록 일부 개정 하여 정비코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1) 토지의 지하, 지상공간의 사용에 대한 평가조항 삭제(안 제28조)
 -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에서 이미 규정('06. 12.30 개정)
- 2) 제38조 본문중 “영 제27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영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”로 시행령 개정에 따른 근거 조문 변경(안 제38조)
- 3) 제39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동항제4호중 “건물바닥면적의 2배가 제1호 의 소규모 토지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규모의 범위내의 토지포함”을 “다만 단독주택의 경우 200㎡를 한도로 한다”로, “분할매각할 수 있다”를“분할매각할 수 있으며, 매각시 잔여지가 「건축법」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 범위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매수자외의 연결 토지소유자가 없는 경우 잔여지까지 일괄매각할 수 있다”로 한다(안 제39조제1항제1호 및 동항 제4호)
- 4) 분수림의 설정에 관한 조항 삭제(안 제43조)
 -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7조 삭제('06. 12. 30개정)
- 5) 은익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본문중 “1,000만원”을 “3,000만

원”으로 동조1호 본문 중 “200만원”을 “600만원”으로 하며, 동조 제2호 본문중 “100만원”을 “300만원”으로 한다(안 제63조)

다. 관계법령

- 「건축법」
-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

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최진기)

- 개정조례안은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과 2007년 공유재산 관리기준 변경에 따른 개정사항을 동 조례의 관련 내용을 정비하는 것임.
- 주요내용으로
 - 토지의 지하, 지상공간의 사용에 대한 평가조항을 삭제하고,
 - 조례 제39조제1호와 제4호가 중복되므로 통합하여 보존부적합 면적의 범위와 대상을 명확히 함과 동시에 공유재산 건물별 매각면적의 상한을 지정하며, 공유재산 무단점유 확산 및 무분별한 공유지의 매각을 방지하고,
 - 매각시 잔여지가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일괄 매각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증대하였으며,
 - 은익내산 신고보상금을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 제84조에서 정한 내용으로 일치시킴.
- 검토의견으로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변경된 부분을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 따라 수정·보완하는 것이므로 조례를 개정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 : 없음